

의안번호	2217254
의 퇴 인	윤준병의원
회 답 일	2026.3.27.
추계번호	26D1261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,700만원(연평균 1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	57	-	-	-	-	57	11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2 ~안 제30조의4 (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)	-도지사는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·지원, 지역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활성화 산업 등의 발전기반 조성,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그린수소 생산 촉진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린수소 생산 지역에 그린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그 외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-기후에너지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수소 생산 촉진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그 외 그린수소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-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 활용 국가시범도시를 우선 지정할 수 있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수소 활용 국가시범도시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¹⁾ 의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32조의3 (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)	-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 ²⁾ 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	재량규정
3	안 제32조의7 (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)	-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32조의8 (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)	-도지사는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32조의9 (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)	-도지사는 새만금 지역 내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초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6	안 제41조의3 ~안 제41조의6 (실증특구내 「지 능형 로봇법」 적 용 특례 등)	-도지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연구·실증 목적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실증 중 발생한 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도지사는 실증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도지사는 제41조의2에 따른 로봇 실증특구에서 생산된 실증제품의 민간 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·도입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국가는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41조의7 ~안 제41조의8 (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지원 등)	-도지사는 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 -국가는 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, 기술사업화, 창업 및 기업 유치, 전문인력 양성, 글로벌 협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데이터, 반도체, 컴퓨팅 인프라 등 기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-국가 및 도지사는 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집적화, 기업 유치,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업·기관 및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-도지사는 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시험·검증·인증·표준화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·인증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41조의10 (자율형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등)	-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·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민 행정업무 및 내부 행정업무에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을 도입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41조의11 (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)	-도지사는 첨단 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내에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- 1) 제36조(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·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0조의2 ~안 제30조의4(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2	안 제32조의3(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특례)	×	지원 대상인 에너지특화기업 및 기업별 지원 규모 등을 추정 하기 곤란함
3	안 제32조의7(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4	안 제32조의8(산업 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·재생에너지 설 비 설치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5	안 제32조의9(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6	안 제41조의3 ~안 제41조의6(실증 특구 내 「지능형 로 봇법」 적용 특례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7	안 제41조의7 ~안 제41조의8(피지 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지원 등)	0	(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 수립)
		×	(재정적 지원 관련)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8	안 제41조의10(자율 형 인공지능 행정 시 스템 도입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9	안 제41조의11(데이 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
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, 세제지원, 연구·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41조의7에 따른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추계에 활용한 2024년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을 준용함
 -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 수립(안 제41조의7)

- 안 제41조의7에 따른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의 “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”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 5,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³⁾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은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5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계획	57	-	-	-	-	5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「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(의안번호: 2213471)」에 대한 비용추계서 상 계획 수립 비용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